

【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】

접수일	'20. 6. 15.	회신일	'20. 6. 29.	
소관부처	국토교통부	담당과	건축안전과	
제목	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			
건의 내용	○ 기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·신고하고자 할 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제출에 대한 제도 개선(면제 또는 완화)			
부처 의견 (1차)	☐ 일부수용, ☐ 수용		☒ 기초치	☐ 중장기검토
			☐ 수용곤란	
	○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해 건축물 용도별 점유·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규정*			
	*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(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)			
	- 현행 「건축법」에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적용 설계하중* 및 건축물에 작용하는 실제 작용하중도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용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규정			
* (적용 등분포 활하중) 주거용 건축물 거실 2kN/㎡, 식당 5kN/㎡ 등				
○ 다만, 「건축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른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% 미만*인 경우 별도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				
* 일체증축, 구조변경 시 구조내력의 5%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시 동일하게 적용(KDS 41 17 00,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)				
위원회 심의 (입증책임)	【심의결과】	☐ 수용	☐ 일부수용	☐ 중장기검토
	【심의개요】	☐ 수용곤란		
	【심의내용】			
	【추가검토】			
부처 의견 (최종)	☐ 일부수용, ☐ 수용		☐ 기초치	☐ 중장기검토
			☐ 수용곤란	
	수용(일부수용) 시 개선형식		법률 개정 ()	
			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 ()	
			행정규칙(고시, 훈령, 예규 등) 개정 ()	
			지자체 규정(조례, 규칙 등) 개정 ()	
기타 제도(내부규정, 계획, 해석 등) 개선 ()				
		○		
추진 일정	○			